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5회 임시회(2020. 2.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4
----------	------

2020. 2. 5.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
- 나. 제 출 일 : 2020. 1. 21.
- 다. 회 부 일 : 2020. 1. 22.

2. 제출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한 법제처 협업과제 결과에 따른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권에 대한 사항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임명 및 위촉권의 제한사항 삭제
(안 제4조제3항, 안 제17조제3항)
- 나. 위원회 개의 정족수 관련 규정 개정(안 제6조제2항)
- 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비상설 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필요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19. 12. 19.~ 2020. 1. 8.(의견 없음)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¹⁾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동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 요구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차원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함.

나. 주요 조문 검토

- 구청장의 위원 임명 및 위촉권 제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3항)
- 위원회 개의 정족수를 당연직을 제외한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과반수 출석으로 제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2항)
-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권한 제한 사항 개정(안 제10조제2항)
- 구청장의 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위촉권 제한 사항 삭제(안 제17조 제3항)

1)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상설 운영에서 필요시 운영하는 비상설 규정으로 개정(안 제17조제4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임기 규정 삭제(안 제18조)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 구성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특성 성별 위촉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위원회 개의 정족수는 당연직 출석 개의요건을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함.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임명과 위촉의 직접 규정은 구청장의 위원임명 및 위촉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으로 삭제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임명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제111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명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음.

- 아울러 도시건축위원회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 2015. 12. 31. 구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운영횟수가 한 차례에 지나지 않아 위원회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설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함.
- 상기 내용을 살펴본 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위법성은 없어 보임.

다만, 새로이 개정된 조례의 적용관계를 밝히거나 종전의 조례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용례 및 경과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중략>

⑦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군·구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④ 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